

정책요구에 대한답변 내용

요구사항	담당부서	답변내용
1. 장애인 이동권 보장 1-1.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의 50%를 2013년까지 저상버스로 도입	대중교통과	○ '14년까지 일반형 시내버스의 40%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고, 나머지 60%는 버스 고급화 사업으로 추진중임. - 현대, 대우 등 버스 제작회사에서는 일반형 시내버스만 저상버스로 생산하고 있으며, 전체 버스대수의 50%를 2013년까지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것은 CNG충전소 부족, 도로여건, 고가로 인한 예산의 과다소요 등 장애요인이 많아 어려운 실정임.
1-2. 저상버스 승하차 가능하도록 도로 및 정류소 환경 개선	대중교통과	○ 저상버스 운행에 방해가 되는 도로의 가각정리, 연석높이 조정,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하고,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류소 시설개선 적극추진
1-3.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확보, 예산지원	교통개선과	○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시·군 인구수에 따라 80~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도에는 총 97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필요 ○ 현재, 시군 재정형편상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으며 ○ 향후,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 지원 방안 검토 예정 ※ 장애인콜택시의 법정확보 기준은 없음
1-4.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	교통개선과	○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일부 시·군만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·군별로 일정대수 이상 확보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○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
1-5. 철도·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폐기하고,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인력배치 - 경기도 안전대책 한국철도공사와 협의	GTX추진기획과	○ 장애인 이동권(철도) 보장 관련 철도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 철폐연대의 주장내용을 통보, 공사의 입장 및 향후계획 등 답변 요구(경기도 GTX추진기획과-2220. '10.4.12) 하였으며, 공사의 의견 청취 후 필요사항 협의 예정

요구사항	담당부서	답변내용
2.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권리보장 2-1.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·휴식·역량강화 지원 확대	장애인복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비사업으로 2010년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비 증액을 보건복지부에 건의('09년 12월 18일)하여 4천 여만원 증액 ○ 이밖에 장애인 역량강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(113백만원), 발달장애인 사회적응훈련(24백만원), 장애청소년캠프(65백만원), 축제한마당(20백만원), 합창대회(10백만원), 장애인음악회(65백만원),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교실(56백만원), 장애인 문화예술활동(120백만원) 등 다양하게 지원
2-2.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'06년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운영 ○ 북부지역에서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지적장애인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○ 시·군별 센터 설치를 지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도 및 시·군 복지관을 활용하여 보완해 나가겠음
2-3. 장애인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, 재활치료서비스 무상 제공계획 수립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9.3.23일 복지부에 소득기준 완화 건의를 하여 2010.2월 부터 기준 완화 (50%→100%) ○ 도비(24억원)사업으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20개소 설치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지원
2-4.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대책 마련 - 지원고용사업 확대 - 전환교육의 내실화 - 직업재활시설 확대 - 발달장애인 고용지원체계 확보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2개 직업재활시설과 31개 재활자립장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및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유치를 위해 노력중임 ○ 금년도에 특수학교 졸업 예정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사서 보조원 배치 시범 사업 시행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과에 따라 확대 예정
2-5. 발달장애 성인의 주거권 대책 마련 - 그룹홈 물량 확대 및 지원체계 확보 - 체험홈/자립홈과 같은 자립형 주거시설 확대 -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이용시설 확대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년 자립형 주거시설 확대를 추진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생활가정 : '08년 77개소 → '09년 90개소 - 주간보호시설 : '08년 61개소 → '09년 62개소 - 체험홈 : 2010 3개소 설치추진(IL센터 중심) ○ 장애인 생활 시설 연계 자립형 체험홈 설치 :2010년 5개소

요구사항	담당부서	답변내용
3.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3-1.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폐지	장애인복지과	○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통일 기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
3-2. 도 차원의 추가 활동보조시간 지원	“	○ 자체 사업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,3급 장애인의 도우미 지원을 위한 “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”을 2005년도부터 추진 중 - 생활도우미사업을 활용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 중 일정기준 (독거, 상위 등급자 등) 대상자의 추가 시간 지원 추진 - 근본적 보완은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 제도 도입 추이를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
3-3. 2,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	“	
3-4. 중계기관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	“	○ 활동보조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 계획에 장애인, 활동 보조인 등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및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수 교육비 지원 계획은 없음
3-5. 활동보조 심사시 장애 유형에 맞는 심사기준 마련	“	○ 장애 유형 및 세부기준(안) 보완은 중앙 건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

요구사항	담당부서	답변내용
4. 탈 시설권 - 주거권 보장 4-1. 탈 시설 5개년 계획 수립	장애인복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 생활시설을 점차 소규모 시설로 전환 추진 ○ 자립형 체험홈 및 그룹 홈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대규모 시설에 따른 문제 해소 추진 계획
4-2. 장애인 자립체험홈 제도적 마련 및 운영비 지원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립생활센터 중 3개 기관에 체험 홈 설치 운영 -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. ○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('09.7.22) 및 체험 홈 운영 지침 시행(2010. 4.12)
4-3. 탈 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금 지원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선은 시설 후원금 등의 자체 적립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제도화 여부는 향후 사례를 검토하여 판단
4-4.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마련	주택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공급의 유형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으며 공공주택은 분양, 건설임대, 매입임대로 분류되고 있으며,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영구임대, 50년임대, 국민임대, 장기전세, 10년임대(분납임대)가 있고, 공공매입임대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이 있음
4-5.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, 주거비 지원정책 실시	주택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취약계층(장애인 등)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특별공급규정을 두고 있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모자가정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
4-6.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	주택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○ 사회취약계층(장애인 등)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장애인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검토되는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예정
4-7.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전면 확대 실시	장애인복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와 별도로 2002년부터 도비(467백만원)사업으로 도시지역 저소득 장애인 대상 개보수 사업 추진 ○ 이외 자활사업, 국토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, 공공근로, 희망근로 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선 사업도 함께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○ 현 지원 제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 수요가 많을 경우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

요구사항	담당부서	답변내용
5. 노동권 및 소득 보장 5-1. 장애인 의무고용률 6%까지 확대	장애인복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도록 “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” 체결('09.9.1) ○ '09. 12월 현재 경기도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율은 3.01%이며,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※ '10년도에는 신규채용 25명중 20%인 5명을 장애인으로 채용예정
5-2. 다수 고용사업장(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전문작업시설)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설립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지원 공모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○ 장애인 직업개발 연구센터(228백만원 지원)기능 강화로 지적, 자폐성 장애인의 1차 산업을 통한 직업 개발 추진 병행
5-3.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 건의 등 적극 노력하겠음
5-4.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 노동자 보호 대책 강구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작업장 유형 개편과 병행하여 설치기준에 맞는 종사자 배치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
5-5.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기존대로 지급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비 장애수당 시책은 장애 연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
5-6.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소득 지원정책 마련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비장애수당(11,664백만원), 월동난방비 지원(4,530백만원), 의료비 지원(919백만원), 장애인 재택고용사업(92백만원), 시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(51백만원) 등을 도 자체 사업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필요시 확대해 나갈 계획임

요구사항	담당부서	답변내용
6.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6-1.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	장애인복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」 및 시행령에서 연차별로 추진하여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 법령 집행 과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정 검토
6-2. 차별없는 경기도를 위한 도 차원의 기구 설치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구의 필요성, 역할, 실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되며, 앞으로 차별 관련 세미나, 워크샵,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검토하겠음
6-3. 차별금지 5개년 계획 수립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령에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적 시행을 규정하고 있어 도 차원의 별도 계획 수립 보다는 소관별 시행 여부 모니터링 및 독려가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7.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 척결 7-1. 실질적인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09년도 : 67개 생활시설에 대하여 민관 합동 실태 조사 실시 ○ 금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정기 평가 계획에 따라 민·관 합동 평가 추진 예정
7-2.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, 사후적 기능 강화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, 사생활보호, 선택권 보장, 시설 서비스 제반 사항 등을 년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·점검하고 있음. ○ 종사자 교육 및 관리 강화와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인권 침해 사전 예방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
7-3. 복지비리와 관련된 대대적인 감사 실시	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09. 2~3월 경기도 내 전 시군의 사회복지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를 실시. ○ 금년부터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으로 보조금 수급 계좌 정비, 개인별·가구별 통합 관리,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등 시행

요구사항	담당부서	답변내용
8. 장애인 교육권 보장 8-1.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, 장애인교육법의 학급당 학생수 규정 준수	경기도 교육청	○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조치 -장애인복지과-4660(2010.04.08)호
8-2.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 확충 및 지원체계 수립	“	
8-3.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대, 실질적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	“	
8-4.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, 장애인 성인의 교육권 보장	“	
8-5. 장애학생의 성인기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 구성	“	